

다.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5조)

국가 등이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산 밀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밀·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수출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제6조)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으며, 밀 생산·유통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유통·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제8조)

국가 등이 밀 및 밀가공품의 유통·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밀 품종별·품질별 저장시설의 설치 및 개수·보수, 소량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047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하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0조제1항제4호의2”를 “법 제60조제1항제4호의3”으로 한다.

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	100	200	5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금농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닭, 오리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537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가축의 입식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0476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업무

별표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동물용 의약품”을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처방전”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법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별표 제2호아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중전의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4조”를 “법 제14조(법 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하목(중전의 타목) 1)·2)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7조의3제1항”을 “법 제17조의3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호 저목(중전의 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4조”를 “법 제34조(법 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아.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7	20	40	80
자.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8			
1)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20	40	80
2)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40	80	100